

# 학 교 규 칙

## 동신초등학교 학교규칙

- 제정 : 1996. 03. 01
- 1차개정 : 2002. 03. 01
- 2차개정 : 2003. 04. 30
- 3차개정 : 2006. 03. 28 행정 제1696호
- 4차개정 : 동신초-3409(2011. 04. 08)
- 5차개정 : 동신초-646 (2012. 02. 06)
- 6차개정: 동신초-1176 (2013. 02. 21)
- 7차개정: 동신초(2017.02. 16)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보통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 4. 30)
- 제2조(학교명칭) 본교는 『동신초등학교』라 칭한다.
- 제3조(학교소재지) 본교 소재지는 전라북도 정읍시 상동중앙로 15(상동 280번지)로 한다.(개정 2003. 4.30, 2016. 11.)

### 제2장 수업연한·학년·학기·휴업일

- 제4조(수업연한) ①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 ② 본교 1학년에 입학한 학생은 당해 학년을 포함하여 향후 6개년간 재학할 수 있다.
- ③ 다른 학교에 입학하여 재학하다가 본교에 전입학한 학생은 이전 학교 재학기간을 포함하여 6개년 간 재학할 수 있다.
- 제5조(학년·학기) 매 학년은 이를 2학기로 나눈다. 제1학기는 3월 1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초·중등교육법 44조(학기)개정·공포, 2004. 2. 17)
- 제6조(휴업일 등) ① 본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 ㉠ 관공서의 공휴일
  - ㉡ 개교기념일 : 3월 20일
  - ㉢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 ㉣ 학년말 방학
  - ㉤ 학교장이 필요로 하는 휴업일

동 신 초 등 학 교

- ㉞ 토요일 : 주5일 수업과 관련하여 토요일을 실시한다.(신설 2006. 3. 28)
- ② 제1항 제㉞㉟㊱의 방학기간은 법정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적절히 조정 할 수 있다.
- ③ 학교의 휴업일은 제1항 각 호의 휴업일을 포함하여 매 학년도 시작 전(2월말까지)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
- ④ 제 1항 각 호 외에 비상 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 휴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때 학교장은 이를 지체없이 정읍교육지원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휴업기간이라도 학교장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등교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3. 4.30)

### 제3장 학급편제 및 학생 정원

제7조(학급수) 매 학년도 3월의 학급편성은 공립 초등학교 학급편성 기준과 정읍교육지원청의 학급배정 기준에 의하여 편성한다.

제8조(학생정원) ① 학급당 학생 정원은 공립 초등학교 학급편성 기준에서 시단위 학급 편성 기준에 따른다.

- ② 다음과 같은 경우의 어린이의 학적은 정원 외로 관리한다.
  - ㉠ 입학이후에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어린이
  -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3개월 이상 결석 중에 있는 어린이(개정 2003.4.30)

### 제4장 교육과정 편성·운영·교과·수업일수

제9조(교육과정 운영)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부 장관이 고시한 국가수준 교육과정과 전라북도 교육감이 정한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지침, 그리고 정읍교육지원청의 교육과정 운영 관련 장학 지침에 의거 본교 교과 과정을 편성·운영한다.(개정 2003. 4.30)

제10조(교과) 전 학년의 교수·학습에 필요한 교과는 교육부 장관이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교과에 따른다.(신설 2003. 4.30)

제11조(수업운영 방법 등) ① 수업시간의 운영에 필요한 일일시정은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따라 학교장이 정한다. 수업시간은 1시간을 40분단위로 운영하되 80분단위로 운영하는 등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특별활동 운영 등 교육상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는 학년을 달리 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하게 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교사들로 하여금 교육상 필요한 주간교수 계획안을 작성 수업에 활용되도록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교육방송 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수업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는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수업시간으로 인정하는 교외 체험학습을 인정할 수 있다. 이때 학교장은 체험학습내용과 경비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필하여야 하고, 당해 교사는 지도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는 특정 교육활동에 대하여 시간에 구애 없이 운영을 허가 할 수 있다.(신설 2003.4.30)

제12조(학교 밖에서의 수업활동) ① 학교장은 이후 정보통신 매체의 발달로 화상 수업이 가능해지고, 화상수업을 이용한 어린이들의 원격수업 여건이 성숙되면 어린이들로 하여금 재택수업도 할 수 있게 고려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학교 밖에서의 수업활동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계획·추진할 수 있고 학교 밖 수업활동 기간을 출석수업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③ 체험학습은 개별 위탁 체험학습, 집단 교류 체험학습, 부모님 또는 보호자와 함께 하는 효도·방문 체험학습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④ 매년 초 전라북도교육청 체험학습 추진 지침에 의거하여 실시한다.(별도 지침)

제13조(교육평가) ① 매년 초 전라북도교육청 지침 및 학교 평가계획에 의거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가정에 알려야 한다.

② 전 교과와 교수 - 학습과정에서 형성평가와 수행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③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는 학년도 초에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정확히 실시 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03.4.30)

제14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90일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연구학교 운영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 제2호에 의거 정읍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1/10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개정 2012.3.1)

②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학년의 수업일수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03.4.30)

제15조(특수교육) ① 학교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기회에 있어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가 선정(특수학급 또는 통합학급)되면 특수교육운영계획에 의하여 개인별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여 장애특성 및 장애정도를 고려한 개별화교육을 실시한다.

③ 평가와 관련한 기본사항은 본교 평가계획에 따르며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평가참여방법이 포함된 평가조정계획은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별로 결정한다.

제16조(학습더듬 학생 지도) ① 매년 도교육청 지침과 학교 실정에 맞게 기초학력 향

상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② 기초학력 향상 추진 계획에 의해 학년 초 학습더딤 학생을 선별하고 학습더딤의 수준과 원인을 파악한다.

③ 학습더딤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학교 자체 및 교육지원청 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권장하여 기초학력을 향상시킨다.

### 제5장 입학·재입학·편입학·전입학·취학유예·복학

제17조(정의) 이 학교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신설 2003.4.30)

- ① 재입학이라 함은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이후에 질병 등의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어 의무취학 유예를 허가 받은 어린이가 이듬해 3월에 본교에 다시 입학함을 말한다.
- ② 편입학이라 함은 본교 이외의 초등학교에 다니다가 자퇴하였거나 지금까지 취학한 사실이 없이 학령에 달해 있는 어린이가 본교에 입학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③ 전입학이라 함은 본교이외의 국내 초등학교에 다니던 어린이가 주소지 변경으로 본교 학구내 거주하게 되어 본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④ 취학유예라 함은 초·중등 교육법 제 14조와 동 시행령 제 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 유예를 허가 받은 경우를 말한다.
- ⑤ 복학이라 함은 전항에 의거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어린이가 유예원인의 소멸로 인하여 다시 본교에 취학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⑥ 적령아라 함은 초·중등 교육법에 의거 만6세가 되어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연령에 이른 어린이를 말한다.
- ⑦ 학령아라 함은 초·중등 교육법에 의거 초등학교 의무취학 대상 연령인 만 6세부터 만 12세 달해 있는 어린이를 말한다.
- ⑧ 의무취학 대상아라 함은 초·중등 교육법에 의거 초등학교 취학 대상연령에 있는 만 6세부터 12세에 달해 있는 어린이를 말한다.
- ⑨ 조기입학이라 함은 초등학교 입학연령인 만6세에 달하기 전인 5세 어린이로 초·중등 교육법에 의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8조(입학) ① 매 학년도 초의 입학은 당해 학년도 적령아로서 상동, 시기동, 시기3 동장이 통보해 준 취학아동 명부상의 아동만을 입학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매 학년도 초의 입학은 당해 학년도 적령아로서 정읍교육지원청에서 지정한 학구의 동장이 통보해 준 취학아동 명부상의 아동만을 입학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입학기일 후 7일 이내에 취학하지 아니 하거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어린이가 있을 때에는 이를 당해 어린이의 학부모 또는 어린이의 거주지 동 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동장이 본교에 보내준 취학아동 명단에는 빠져 있어도 학령에 해당되는 연령의

어린이로 본교 학구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어린이로 확인되면 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학 학생의 명단이 그 어린이 거주지 동장에게 통보되어야 한다.(개정 2003.4.30)

제19조 (미취학 아동의 관리) ① 학교장은 의무 취학대상 어린이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어린이의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7일 이상 결석을 할 때
- ㉡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고용자에게 방해 당하고 있을 때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7일 간격으로 독촉 또는 경고한 후 7일이 경과하여도 그 상태가 계속 지속되거나 또는 2회 이상 독촉 또는 경고한 때에는 그 내용을 어린이의 거주지의 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03.4.30)

제20조(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 ①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 받고자 할 경우 어린이의 보호자는 질병 등 취학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의사진단서, 유예 신청서)를 갖추어 학교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학교장은 이를 검토하여 허가할 수 있다. 이 때 유예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이 기간은 연장 또는 다시 유예할 수도 있다.

- ② 학교장은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 때에는 보호자와 동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입학이후에 질병 등 학업을 계속할 수 없어 의무 취학 유예를 허가 받은 어린이가 복학을 원할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 ㉠ 의무취학 유예 당해 학년도에 복학을 원하면 당해 학년에 복학한다.
  - ㉡ 의무취학 유예 이듬해에 복학을 원하면 유예된 당시의 학년에 복학한다.
  - ㉢ 의무취학 유예 이듬해에 복학을 원하면서 진급된 학년에 복학할 경우에는 적절한 평가결과에 따라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④ 어린이가 질병 이외에 행방불명, 성장부진 등의 사유로 학부모가 신청한 취학유예를 결정할 때 의사 진단서 외에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장이나 학부모의 소견서 등도 증빙서류로 사용할 수 있다.

⑤ 어린이가 행방불명되어 보호자가 취학유예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학교장이 사유를 확인한 후 보호자 신청 없이도 이를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03.4.30)

제21조(미취학자 및 병결 장결자의 관리) ① 취학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입학하지 않거나 입학이후 계속해서 7일이상 결석하여 7일 간격으로 독촉 또는 경고를 하였어도 계속 3개월 이상의 장기 결석을 한 어린이의 학적은 정원 외로 관리 한다.

② 법정 전염병으로 인한 결석은 출석부에 우선 병결로 표시한 다음 특기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고 이 병결로 인하여 시상관계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이 경우 학부모가 의사의 진단서 등으로 법정전염병으로 인한 결석임

을 증명하여야 하고, 학교장은 출석부에 진단서를 첨부해 두었다가 학년말의 생활 기록부 정리 때에는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③ 유행성 눈병이나 독감주의보로 인한 결석은 학교장의 허가에 의해 법정전염병으로 인정 결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신설 2003.4.30)
- ④ 여학생의 인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은 교육인적자원부 훈령[제676호, 별지 제8호 출석상황관리,2.결석 나.(6)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내에서 확인을 거쳐 출석으로 인정한다.
  - ㉠시행대상은 생리통으로 인해 수업출석이 어려운 여학생으로 한다.
  - ㉡출석인정 기간 및 횟수는 월1회(지각, 조퇴, 결과 합산해 3회를 출석인정 1일과 동일하게 간주)로 한다.
  - ㉢시험기간 중 출석 인정은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한 결석확인서, 시험기간 외의 일반 출석기간은 보호자 의견서 또는 담임교사,보건교사의 확인서를 결석 전 날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거나 부득이한 경우 결석 당일 담임교사에게 전화 후 다음날 제출하여 학교장의 추후 허가를 받는다.
  - ㉣시험기간 중 출석을 인정할 경우에는 전후 2개 성적을 평균하여 인정한다.(신설 2006. 3. 28)

제22조 (전출입 및 복학의 절차) ① 어린이가 주소지의 변경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본교에 그 사실을 알리고, 주소지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전학으로 신고된 학생은 다음 날부터 결석으로 처리하고 전출학교에서 전학서류 송부 요청이 있을 때 서류를 송부한 날 출석부에 “퇴”라고 쓰고 다음날부터 주선으로 굶는다. 다만 전학 신고 이후의 결석은 전학서류 중 출석관련서류에 전학으로 인한 결석이었음을 명기해 주어야 한다.
- ③ 본교에 전입학한 학생은 전입학한 날 출석부에 “입”이라고 쓰고 앞부분을 청선으로 굶고 재적학생 수에 산입한 다음 전입학 서류 송부 요청공문서를 당해 학교에 발송해야 한다. 며칠 후 받아 본 전입학 서류에 전학으로 인한 결석이 있을 경우 이 기간은 출석한 것으로 처리해 주어야 한다.
- ④ 6개월 이상 장기간 결석을 하고 출석을 했을 경우 학부모가 원하면 당해 학년으로의 유급을 허락할 수 있다.
- ⑤ 가정형편에 의하여 학교에 다니지 못한 학령아가 편입학을 원할 경우 또는 유예, 면제, 정원의 관리자가 재 입학할 때에도 학교장이 학령수준의 학력을 평가하여 재 입학 학년을 결정할 수 있다.
- ⑥ 학교생활의 부적응 또는 가정형편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교육환경을 개선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정읍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당해 어린이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 ⑦ 재입, 편입, 전입생의 수업일수는 다른 학생의 수업일수와 같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수업일수가 당해 학년의 수업일수의 2/3미만이 될 경우에는 당해 학년도의 재입,

편입, 전입을 허가할 수 없다.(개정 2003.4.30)

제23조(재외국민 자녀의 입학절차 등)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본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입학 하는 경우에는 출입국 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 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거류 신고증을 학교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전학절차에 갈음한다.(개정 2003.4.30)

제24조 (만 5세 아동의 취학) ① 학교장은 정읍교육지원청 교육장이 고시한 범위 내에서 만5세 아동의 취학을 허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월 31일에 그 어린이의 취학의 계속여부 판정을 위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판정결과를 전화 등의 방법으로 가정에 통지해 주어야 한다.

② 이 어린이의 계속 취학이 허락되었을 경우 당초의 취학일로부터 40일 이내에 그 어린이가 거주하는 동의 장에게 그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03.4.30)

제25조 (조기입학의 허가) 만5세 어린이의 조기입학은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서만 임시로 허가하고 전조(前條)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 ① 학부모 또는 보호자의 원에 의해 취학은 임시로 허가되어야 한다.
- ② 당해 어린이의 조기입학으로 인하여 학급편성에서 학급수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허락할 수 없다.
- ③ 만 5세 어린이 취학 희망자가 많을 경우 생년월일이 빠른 순서로 취학을 허가한다.
- ④ 만 5세 어린이의 조기입학 절차는 다음과 같다.
  - ㉠ 원서 접수기간 매년 2.21~2.24 (입학원서 및 주민등록 초본 제출)
  - ㉡ 임시 입학허가 통보 : 학부모에게 매년 2월말일(말일이 공휴일이면 그 전날까지 통보, 3.1~3.31일까지 수락가능 여부 관찰)
  - ㉢ 입학허가 통보 : 취학의 최종결정 통보 매년 4.1일 (1일이 공휴일이면 그 익일에 통보,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보)
  - ㉣ 동장에게 조기 입학자 명단 통보 : 매년 4.10이내
- ⑤ 3월중의 만5세 어린이의 취학은 정상 취학아동과 같이 재적수에 포함하여 관리하고 한 달 동안 수락가능 여부를 관찰하여 3월말일 평가에 의해 취학여부를 최종 판정하여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만일 수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출서류와 같이 작성하고 재적수에서 제한 다음 학부모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03.4.30)

## 제6장 졸업·수료·조기진급·조기졸업

제26조(수료와 졸업) ① 각 학년 과정의 수료(또는 졸업)는 당해 학년의 교육과정 운영이 종료되는 날 현재까지 출석부에 등재되어 있는 어린이가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2/3이상 출석했을 경우에 한하여 당해 학년 수료 (또는 졸업)를 인정하고 다음학년으로의 진급을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취학 유예(또는 면제)상태에 있는 어린

이와 제23조 ①항에 의거 정원의외로 관리되고 있는 어린이는 수료에서 제외한다.

② 졸업은 6학년을 수료하여 초등학교 전 과정을 마쳤을 경우를 말하며 의무취학 유예(또는 면제)상태에 있는 어린이는 제외한다.

③ 1~5학년 과정을 수료한 경우 수료자 전원이 다음 학년으로 진급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3.4.30)

제27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①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진급 하고자 하는 경우 초등학교는 1학년에서 3학년, 2학년에서 4학년, 3학년에서 5학년,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다.(개정 2013.2.19)

②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졸업 하고자 하는 경우 초등학교는 5학년에서 조기졸업 할 수 있다.(개정 2013.2.19)

제28조의1(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 기준) 학교의 장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는 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①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에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초 1·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의 학업 성취가 우수한 자
2.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검사에서 지능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3.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 또는 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으로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올림픽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제28조의2(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절차) ①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은 매 학년 초 1개월(3월 말) 이내에 한다. 다만 신입생의 경우에는 학년 초 2개월(4월 말) 이내에 한다.(신설 2013.2.19)

②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제28조의1 기준에 따라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으로 선정된 학생(이하 “조기진급·졸업대상자”라 한다)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으로부터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이 제3항에 따라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할 때에는 제28조의4 제1항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⑤ 조기진급·졸업대상자가 제4항에 따라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⑥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위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학교 규정으로 정한다.

제28조의3(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 및 절차) ① 학교의 장은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에게 조기진급·졸업대상자 여부와 관계 없이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의1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수 있다.(신설 2013.2.19)

②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㉗, ㉘를 모두 만족한 경우에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㉗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6조제2항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 전형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③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때에는 제29조의4 제1항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④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를 위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학교 규정으로 정한다.

제28조의4(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학교에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신설 2013.2.19)

1. 제28조의3 제4항에 따른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2. 제28조의4 제3항에 따른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학교의 교감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학교의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⑤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 규정으로 정한다.

제28조의5(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제28조의4제1항 각 호의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신설 2013.2.19)

② 제28조의4 제1항 각 호의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29조(명예졸업) ① 본교에 3년 이상 재학하였고, 전쟁이나 천재지변 등 지극히 피치 못할 사정으로 본교 6개년 전과정을 마치지 못한 사람에게는 명예졸업을 인정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만 명예졸업을 인정할 수 있다.

㉠ 명예졸업 대상자와 같은 시기(전후3년)에 재학했던 동문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명예졸업 추천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 교직원 회의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각각 3분의 2이상의 인원이 명예졸업 인정에 찬성했을 경우

㉢ 대상자가 다른 초등학교에서 졸업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본인(본인이 사망했을 때는 최측근 가족)이 이를 원하고 있을 경우(신설 2003.4.30)

제30조(졸업장 수여) ① 학교장은 초등학교의 6개년 전과정을 마친 어린이에게는 졸업장(서식 13)을 수여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29조에 의한 조기졸업의 경우에도 전항과 같은 서식의 졸업장을 수여토록 한다.

③ 명예졸업으로 인정되었을 경우에도 졸업장(서식 14)을 수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명예졸업임이 졸업장에 표시되어야 한다.(신설 2003.4.30)

제31조(학교생활기록의 작성활용) 학교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소정 서식과 기준에 따라 기록·관리(전산화 자료입력·보관 등)하고, 학생지도와 상급학교 진학 및 진로지도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신설 2003.4.30)

## 제7장 학생 포상 및 학생 징계

제32조(포상) 학교장은 모든 교육활동을 통하여 각 교과별로 학업성적이 우수한 어린이와 선행·효행·봉사활동 등으로 타의 귀감이 된 어린이, 그리고 소질과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그 실적이 두드러진 어린이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다음과 같이 포상할 수 있다.

① 졸업생에 대한 시상 및 장학금은 매년 3월에 졸업사정위원회의 규정에 의거 시행한다.(별도계획)

② 재학생의 장학금은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선정(추진)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③ 재학생의 시상은 학년도 초에 별도의 시상계획을 만들고 그 계획에 따라 시상토록 한다.(개정 2003.4.30)

## 제8장 학생 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33조(학급단위 자치활동) ① 어린이들의 자치능력 신장을 위한 기초로서 4학년 이상은 학급마다 학급 다모임을 조직·운영한다.

② 학급다모임의 조직 및 운영은 별도의 계획에 의한다.(신설 2003.4.30)

제34조(학교단위 자치활동) ① 학급 다모임의 기초 위에서 4학년 이상 학급임원(급당 4~6명)이 참여하는 전체 다모임을 조직·운영한다.

② 전체 다모임의 조직 및 운영은 별도의 계획에 의한다.(신설 2003.4.30)

제35조(전체 다모임 임원 및 전교 학생장) ① 전체 다모임 조직은 학년 초 4-6학년 담임회의에서 결정된 계획에 의한다.

② 다모임 임원과 학생 대표 선출은 후보자의 등록을 받아 학생이 참여하는 직접 비밀 투표로 선출한다.

제36조(기타 학생 자치 활동) 학급·전교 어린이회 외의 어린이 자치 활동도 적극 권장·보호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으로서의 본분과 학생자치 활동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한다.(신설 2003.4.30.)

## 제10장 학칙의 개정

제37조(학칙개정) ① 학칙은 교육관계법령이 개정되었거나 또는 학교경영상 필요한 경우 개정할 수 있다. 다만 학기의 개시 직전까지는 개정하여 적용상 혼란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칙의 개정은 그 내용을 교무회의(전체 교원만으로 구성함)에 회부하여야 하며 과반수의 동의에 의하여 발의한다.

③ 발의된 개정안은 관련내용의 검토와 의견 수렴 및 교무회의에서의 심의를 거친 다음 자구 수정 후 최종안으로 확정한다.

④ 학칙개정에 관한 최종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확정한다.

## 부 칙

1. 조기입학 심의를 하기 위해 조기 입학 심의위원회를 둔다.
2. 특수교육아동의 교육과 평가를 하기 위해 특수교육개별화 교육개별화교육 운영위원회와 진단평가협의회(이하“특교육위원회”한다)를 둔다.
3. 이 학교의 학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학교의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부 칙 (2003.4.30. 관리 제868호)**

1. 학교의 학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2002학년도에 규정되지 않은 학적변동 관련한 용어 사용과 어린이들의 출결사항 관리는 초·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616호 : 2001.3.29) 별지 제4호 및 제5호 서식에 따른다

**부 칙 (2006. 3. 28. 행정 제 1969호)**

(시행일) 이 학칙은 200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동신초-3409(2011. 04. 08)**

(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동신초-646(2012. 02. 06)**

(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동신초- (2013. 02. 19)**

(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동신초- (2016. 11. 19)**

(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식 13>

제 호

**졸업장**

성명 ○ ○ ○

19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초등학교 6개년의 전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본 장을 수여함.

20○○년 ○월 ○일

동신초등학교장 ○ ○ ○

제 호

명 예 졸 업 장

성명 ○ ○ ○

19○○년 ○월 ○일생

위 분은 19○○학년도 본교에 재학한 사실이 있으나 당시의 어려운 여건으로 졸업이 보류되어 왔던 바, 그 후 동신인으로 즐기찬 삶을 이어오면서 동문의 명예를 드높이는 데 이바지하였음이 인정되어 본교 규칙 제30조와 제31조 ③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졸업장을 드립니다.

20○○년 ○월 ○일

동신초등학교장 ○ ○ ○